

—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안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자활의지가 있는 수급자에게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자활자립 계기마련을 유도하고,
- 별도의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의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, 통합 신설 조례를 제정하여 특별회계의 통합관리로 자금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전세입주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(안 제3조)
 - 세입주 대상은 입주신청일 현재 1년이상 구미시 관내에 주소를 둔 월세, 무료임대 등 무주택수급자 세대로 하고
 -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은 수급자로서 영세상행위 자금, 생계자금, 학자금, 기타 사업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 함.
- 전세 입주보증금 (안 제5조, 제6호, 제8조)
 - 전세 입주보증금은 세대당 2천만원이하 무이자로 하고
 - 융자기간은 3년이며,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 가능토록 함.
-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액 (안 제7조, 제9조)
 - 융자한도액은 1천만원이하 무이자이고, 상환기간은 2년거치 2년균분 상환으로 상환기간 경과시에는 5%의 연체이자를 징수 토록 하며,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함. (안 제9조)

- 천재지변 등으로 자금이 회수가 불가능할 때 상환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 (안 제21조)
- 기존 구미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 및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주민소득지원을 위한 자금은 별도 신설되는 특별회계 소관으로 이입조치 함.
(안 부칙 제2조, 제3조)

4. 참고사항

-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
- 구미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의 「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」중 자금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과 소관인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사항과 「구미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」를 통합 운용코자 하는 것으로,
- 주요내용은 전세입주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, 전세계약 및 전세입주보증금에 관한사항,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액 등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의 전반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
- 주요 변경내용은 안 제5조의 전세계약 방법에 있어서 당사자간계약으로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, 전세입주보증금을 세대당 1천만원이하를 2천만원이하로 확대하고 안 제10조의 정기적금 납입금액을 매월 「3만원~6만원」을 「5만원~20만원」으로 개정하는 것임.